

의안번호	2208766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4. 9.
추계번호	25G1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여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 관련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일부 항목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일부 항목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 등은 2026년 3조 7,941억원, 2031년 6,909억원 등 2026년에서 2031년까지 6년간 총 24조 7,169억원(연평균 4조 1,1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세수는 2027~2031년간 총 455억원(연평균 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수는 2026~2030년간 총 636억원(연평균 1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수는 2026~2030년간 총 105억원(연평균 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증여세 세수는 2026~2030년간 총 3,270억원(연평균 6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세수는 2027~2031년간 총 1조 9,315억원(연평균 3,8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등 세수는 2026~2030년간 총 254억원(연평균 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등 세수는 2026~2031년간 총 2조 8,724억원(연평균 4,78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세수는 2027~2031년간 총 121억원(연평균 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2026~2030년간 총 14조 9,888억원(연평균 2조 9,9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2026~2031년간 총 4조 717억원(연평균 6,7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2026~2031년간 총 3,339억원(연평균 5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2026~2030년간 총 85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수는 2026~2030년간 총 259억원(연평균 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가 기존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하며,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3조)	-	-91	-91	-91	-91	-91	-455	-9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9조의2)	-127	-127	-127	-127	-127	-	-636	-127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9조의3)	-21	-21	-21	-21	-21	-	-105	-2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1조제1항)	-654	-654	-654	-654	-654	-	-3,270	-65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2조)	-	-3,620	-3,738	-3,859	-3,984	-4,114	-19,315	-3,86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7조의2)	-53	-52	-51	-50	-47	-	-254	-51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9조의3)	-3,192	-5,745	-5,745	-5,745	-5,745	-2,553	-28,724	-4,787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99조의4)			추	정	곤	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04조의30)	-	-21	-23	-24	-26	-28	-121	-2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5호및제6호)	-26,933	-28,374	-29,894	-31,498	-33,190	-	-149,888	-29,978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3호, 제1항제4호의2, 제1항제4호의5, 제1항제5호, 제1항제9호의2, 제1항제12호, 제2항제9호)	-6,330	-7,138	-8,016	-9,020	-10,173	-40	-40,717	-6,78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	-567	-655	-666	-678	-690	-83	-3,339	-556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 후단, 제111조제1항제2호)	-17	-17	-17	-17	-17	-	-85	-17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11조의5제1항)	-47	-49	-52	-54	-57	-	-259	-52
합 계	-37,941	-46,564	-49,095	-51,838	-54,822	-6,909	-247,169	-41,195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2	안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3	안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4	안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5	안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6	안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7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2031년부터 저율과세* * 2031년 5%, 2032년 이후 9%	
8	안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9	안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10	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11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공동주택 관리용역, 온실가스 배출권, 임산물 증 목재펠릿 및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제공,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12	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13	안 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분(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1조제1항(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14	안 제111조의5제1항(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2	안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3	안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4	안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5	안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6	안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7	안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8	안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 과세특례)	×	향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추계 곤란
9	안 제104조의30 (우수선화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0	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부가가치세 영 세율의 적용)	○	
11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다만, 제106조제1항제2호 공장, 광 산, 건설사업현장 및 노선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장, 학교 구내 급식용역 금액 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추계 곤란
12	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	
13	안 제106조제1항 후단 중 같은 항 제1호 관련 부분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및 제111조제1항(석유류 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14	안 제111조의5제1항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 (일부 항목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조합법인 과세특례 선화주기업 등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전년 귀속소득, 2027년~2031년)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안 제89조의3 조합예탁금 저율과세(2031년 발생분) 및 안 제106조 공장 등 급식용역 제공,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면제 등 일부 항목은 현행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으로 2027년부터 발생

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3조)

□ 개정안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세액공제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9조의2)

□ 개정안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다.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9조의3)

□ 개정안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라.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1조제1항)

□ 개정안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2조)

□ 개정안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과세표준 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3년 신고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
 -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일반법인의 세율이 인하되었음을 감안하여 2023년 이전 감면실적을 현행 세율에 맞춰서 조정하여 활용
- * 단, 2023년 조합법인의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
-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 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2020~2024년)간의 조정실적의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7조의2)

□ 개정안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규모는 동 저축의 2024년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

사.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9조의3)

□ 개정안에 따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규모는 조세지출의 최근 2년(2023~2024년)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99조의4)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수 감소 예상
- 그러나 향후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

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04조의30)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기반이 되는 해상운송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전망(2024.10.)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 향후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우수 선화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우수 선화주기업의 운송비용에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비중은 2024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5년 세액공제는 2024년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지수와 수출입 물동량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추정
 - 2026년 이후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은 2025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수출입 물동량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개정안에 따른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 향후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는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실적 및 어업용 기자재 실적을 구분하고, 각각의 최근(2019~2023년) 추세를 반영하여 추정

-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징수 기준)은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 세부 항목을 각각 구분할 수 없음
-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자료(신고 기준)는 최종 조세지출액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나,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조세지출액에 반영함

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06조)

□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각 항목별로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

(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3호)

□ 농어업 작용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관련 산업의 ‘대행용역비(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 10%’로 추계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비의 최근 평균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

- “농업법인조사(농림축산식품부)” 상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농업법인 중 매출액 신고를 하였거나 유급종사자 1인 이상인 농업법인의 자료로 추계
- 매출액 중 위탁영농 및 농작업대행 항목을 활용

□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 등과 관련한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비의 경우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¹⁾ 본 추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2)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 공동주택 중에서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r)에 가입한 단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면제 대상 주택의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반영함

- 면제 대상인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85㎡ 초과 주택, 그 외 지역(수도권

1) 해양수산부 답변자료

및 비수도권의 동 지역 등)의 85~135㎡인 주택으로 구분하여 추계

- 추계에 활용된 자료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무관리대상²⁾ 유형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및 평균 관리용역비임
 - 단지별 타입 및 세대수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추출하되, 관리용역비의 경우 해당 연도에 관리비를 입력한 단지만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집계되지 않거나 및 등록 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추출이 어려운 경우의 공동주택 자료는 추계에 반영하지 않음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관리용역비 × 관련 업종의 부가가치율 × 세율 10%’로 추계

- (관리용역비) ‘면제 대상인 전체 주거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당 평균 관리용역비 합계액’으로 산출
 - 향후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평균 관리용역비는 최근 3년간의 증감률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율)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상 해당 용역이 속해있는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추계기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집단에너지³⁾를 공급받는 유형(‘지역난방’) 주택의 난방용역비를 대상으로 추계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①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국토교통부 답변 자료(’23.3.6.)

※ [참고] 난방유형

- (지역난방)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거지역 등에 집단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난방방식
- (개별난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별난방설비로 난방하는 방식
- (중앙난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중앙집중난방방식 난방설비로 난방하는 방식

-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난방용역비(대상 주택 수 × 1호당 난방용역비) ×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 세율 10%’로 추계
 - (난방용역비) 현재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일부 주택에 대해서만 집계되고 있으므로, 이를 환산하여 전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비를 추정
 - 주택 1호당 평균 난방용역비는 임대 주체·면적·지역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가정
 - 향후 대상 주택 수 및 난방용역비가 최근 연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율)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되,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4)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5호)

-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되, 추계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금이 최근 추세에 따라 증감할 것으로 가정
 -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 거래 시장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책의 영향은 감안하지 않음

(5)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의 세수효과는 조세지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되, 최근의 신규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6)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12호)

- 최근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의 최근 3년간(2021~2023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7)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2항제9호)

- 최근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의 최근 6년간(2019~2024년) 감면실적(2024년은 전망)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수준으로 발

생한다고 가정

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의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
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

○ 최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⁴⁾,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률 추세를 반영

□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면제액을 조정

○ 매년 징수 기간(부가가치세: 분기, 그 외 세목: 월)별로 면제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2호)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면실적(2024년은 전망)의 증감추
이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하.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11조의5제1항)

□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최근 연안
화물선용 경유 공급량 자료의 2022~2024년 연평균 증가율(5.2%)에 따
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

4) 최근 유류세 인하 적용 현황: (2018.11.6.~2019.5.6.) 15% 인하 → (2019.5.7.~8.31.) 7% 인하 →
(2021.11.12.~2022.4.30.) 20% 인하 → (2022.5.1.~6.30.) 30% 인하 → (2022.7.1.~12.31.) 37% 인
하 → (2023.1.1.~2024.6.30.) 경유 37% 및 휘발유 25% 인하 → (2024.7.1.~2024.10.31.) 경유 30%
및 휘발유 20% 인하 → (2024.11.1.~2025.4.30.) 경유 23% 및 휘발유 15% 인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3조)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등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

○ 다음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벤처투자회사 등*이 해당 출자로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
 -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 등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개정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적용기한: 2025.12.31. → 2030.12.31.

□ (감면실적)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최근 5년 (2020~2024년)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는 2020년 2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잠정) 64억원으로 감소
-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식 및 출자지분 매도를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하여 비과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2]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추이: 2020~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연평균 (‘20~’24년)
비과세	24	41	120	205	64	91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동 제도에 따른 비과세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향후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비과세 규모인 91억 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3]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세수 감소효과	91	91	91	91	91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91억 원, 2031년 91억 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55억 원(연평균 9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3조)	-91	-91	-91	-91	-91	-455	-91

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69조의2)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동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 및 부수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임

□ (감면실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의 최근 연도별 감면 실적은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표 5]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2019~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20~'24년 연평균
감면실적	116	135	191	85	114	111	127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0~2024년 감면실적 평균(127억원)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추계

(3) 추계결과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127억원, 2030년 127억원 등 5년간 총 636억원(연평균 1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9조의2)	-127	-127	-127	-127	-127	-636	-127

다.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9조의3)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개요) 동 감면은 어업용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임

□ (감면실적)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후, 연도별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표 7]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2017~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20~'24년 연평균
감면실적	신설	19	19	19	17	24	25	20	21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0~2024년 감면실적 평균(21억원)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추계

(3) 추계결과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1억원, 2030년 21억원 등 5년간 총 105억원(연평균 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구 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69조의3)	-21	-21	-21	-21	-21	-105	-21

라.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1조제1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100%)

[표 9] 영농자녀등의 증여세 감면 요건

구분	내용
증여인 요건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
수증인 요건	●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감면대상 자산	● 농지: 「농지법」 상 농지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 상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립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것, 조립기간이 20년 이상이 산림지의 경우 조립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따른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상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상 어선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 어업용 토지 등: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
누적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적용기간: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실적은 2019년 596억원에서 2023년 654억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10] 최근 5년간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액
감면실적	596	536	773	712	654	65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및 결과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2026년 654억원, 2030년 65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270억원(연평균 6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65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증여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1조제1항)	-654	-654	-654	-654	-654	-3,270	-654

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72조)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

-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 9~12%의 저율과세 적용

[표 12]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

		일반법인	조합법인
적용대상		일반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당기순이익 +손금불산입(기부금 등 8개항목 ¹⁾) = 과세표준
과표 구간별 세율	2억원 이하	9% ²⁾	9%
	2~20억원	19% ²⁾	
	20~200억원		12%
	200~3,000억원	21% ²⁾	
	3,000억원 초과	24% ²⁾	

주: 1) 기부금, 접대비, 대손금, 대손충당금,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2)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p씩 상향된 세율 적용

□ (특례실적)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113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4년 3,289억원 수준

-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

[표 13]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법인세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잠정)
과세특례 실적	3,271	3,347	4,230	5,113	3,289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한 후, 2020~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 효과 추정

○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14]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 세율 및 산출세액: 2023년 신고기준

과표구간별	법인수 (개)	과세표준 (억원)	과세특례 적용		과세특례 미적용		세수효과 (A-B)
			세율 (%)	산출세액 (A,억원)	세율 ¹⁾ (%)	산출세액 (B,억원)	
합 계	4,215	59,145	—	6,053	—	11,167	-5,113
2억원 이하	1,181	618	9	56	10	62	-6
2~20억원	2,273	19,307		1,740	20	3,407	-1,666
20~200억원	753	37,307	12	4,032		7,311	-3,279
200~3,000억원	8	1,913		225	22	387	-162

주: 1)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간
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
실적을 조정

—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5]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 2023년 신고기준

과표구간별	법인수 (A,개)	과세표준 (B,억원)	1인당 과세표준 (C=B/A, 억원)	특례 미적용시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		
				세율 (D,%)	산출세액		세율 (D',%)	산출세액	
					1인당 (E=C ×D, 억원)	전체 (F=E ×B, 억원)		1인당 (E'=C ×D', 억원)	전체 (F'=E' ×B, 억원)
합 계	4,215	59,145	—	—	—	11,167	—	—	10,577
2억원 이하	1,181	618	0.5	10	0.05	62	9	0.04	56
2~20억원	2,273	19,307	8.5	20	1.6	3,407	19	1.5	3,215
20~200억원	753	37,307	49.5		10.5	7,311		10.0	6,938
200~3,000억원	8	1,913	239.1	22	55.0	387	21	52.3	368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 2023년 기준 11.5%의 실적이 하향 조정

[표 16]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 2023년 신고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특례적용시 산출세액(A)	특례 미적용시				실적조정율 ([C-E]/C)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 전		'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 후		
		산출세액(B)	특례실적 (C=A-B)	산출세액(D)	특례실적 (E=A-D)	
산출세액	6,053	11,167	-5,113	10,577	-4,524	-11.5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기준으로 2020~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특례 실적은 연평균 3.2% 증가함

[표 17]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 2020~2024년

(단위: 억원, %)

구 분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잠정)	연평균 증가율 (‘20~’24년)
특례 실적	조정 전(A)	3,271	3,347	4,230	5,113	3,289	-
	조정 후 (A×[1-11.5%])	2,894	2,961	3,743	4,524	3,289 ¹⁾	3.2

주: 1)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 (3.2%)을 반영하여 추계

[표 18]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세수효과	-3,620	-3,738	-3,859	-3,984	-4,114

(3) 추계결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3,620억원, 2031년 4,11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조 9,315억원 (연평균 3,8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72조)	-3,620	-3,738	-3,859	-3,984	-4,114	-19,315	-3,863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7조의2)

(1) 조세지출 실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관련 최근 조세지출실적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37억원, 2023년 43억원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2021~2024년 연평균 24.2%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임·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연간 240만원 한도(만기 3년 또는 5년) 가입 시 약정이율과 저축장려금 지급

[표 2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¹⁾	연평균 ²⁾
조세감면액	40	35	37	43	67	46
(증감률)	(△24.5)	(△12.5)	(5.7)	(16.2)	(55.8)	(24.2)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1~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2024년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조세지출액 전망
- 동 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4년 저축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
 - 현재 향후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률에 따라 2024년 이후 조세지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
 - 국고채 3년물의 이자율은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2024.10.)의 전망치 활용

[표 21]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국고채 3년물	3.6	3.1	2.8	2.8	2.7	2.6	2.5
(증감률)	—	(△12.4%)	(△9.3%)	(△2.1%)	(△1.8%)	(△3.3%)	(△4.2%)

자료: 2023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202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3) 추계 결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53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254억원(연평균 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시 세수효과: 소득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안 제87조의2)	-53	-52	-51	-50	-47	-254	-51

사.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89조의3)

(1) 조세지출 실적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조 1,647억원으로 2021~2024년간 연평균 52.7% 증가

[표 2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관련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¹⁾	연평균 ²⁾
조세감면액	4,372	3,269	3,113	6,226	11,647	8,937
(증감률)	(△13.9)	(△25.2)	(△4.8)	(100.0)	(87.1)	

주: 1)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

2) 2023~2024년 평균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2023~2024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8,937억원)을 기준으로 함
 - －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
-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
 - －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p, 2027~2030년 9%p, 2031년 4%p이며,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
 - － 개정안에 따르면 2026~2030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 2031년은 5%, 2032년 이후는 9% 적용

[표 2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

(단위: %, %p)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현행(A)	5	9	9	9	9	9	9
개정안(B)	0	0	0	0	0	5	9
소득세율 변동폭(B-A)	△5	△9	△9	△9	△9	△4	0

- 2023년~2024년 이자소득세율이 14%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8,937억원이므로,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683억원 (8,937억원/14%)으로 볼 수 있음
 -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
- 따라서 상기 세율 1%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6~2031년 6년간 총 2조 8,724억원(연평균 4,787억원)으로 예상

[표 2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안 제89조의3)	-3,192	-5,745	-5,745	-5,745	-5,745	-2,553	-28,724	-4,787

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04조의30)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국적선사’)와 화주 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적선사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지출 중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40% 이상이며, 전년 대비 증가하였을 경우 공제
- 공제대상인 화주기업이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와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

[표 26]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제대상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
공제요건	-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 -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
공제내용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 1%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전년대비 증가분 × 3% ※ 공제한도: 부과된 소득세·법인세의 10%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 (공제실적)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세액공제 실적이 최초로 발생한 2021년 7억원에서 2022년 36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4년(잠정) 7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 2024년의 경우, 2023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운임하락 등으로 세액공제 실적이 크게 감소

[표 2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2021~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잠정)
공제실적	7	36	2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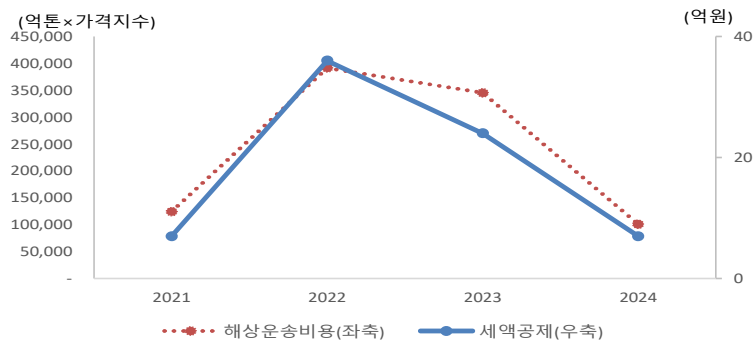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공제 실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2024.10.)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공제 실적은 해운의 수출입 물동량과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지수를 통해 산출한 수출입 해상운송비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 수출입 해상운송비용은 연간 해운 수출입 물동량과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이하 SCFI 지수)의 연간 평균값을 곱하여 계산
 - 세액공제 실적이 최초로 발생한 2021년 이후 세액공제 실적의 증감률과 수출입 해상운송비용 증감률은 높은 상관관계(0.972)를 보임
- ※ 단, 해상운송비용의 증감과 세액공제의 증감간의 시차(1년)를 감안하여 산정

[그림 1]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와 수출입 해상운송비용 추이



주: 수출입 해상운송비용은 연간 해운 수출입 물동량(억톤)과 SCFI 지수의 연평균 값을 곱해 산출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해운화물통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상운송비용이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2024.10.)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5년 세액공제는 2024년 SCFI 지수 상승률 및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18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
 - ※ SCFI 지수(연평균): '23년 1,006 → '24년 2,506(전년대비 149.2% 증가)
 - 해운 수출입 물동량(억톤): '23년 10.05 → '24년 10.23(전년대비 1.8% 증가)
 - 2026년 이후 세액공제는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이 2024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수출입 물동량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2024.10.)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 ※ 단, 해상운송비용의 증감과 세액공제의 증감간의 시차(1년)를 반영하여 t년도 세액공제 증가율은 t-1년도 통관수출입의 증가율 전망을 적용하여 추정

[표 28]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추정치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공제액 추정치	21	23	24	26	28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t-1년)	8.1	7.4	7.3	7.1	7.0

주: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치는 통관수출 증가율 전망과 통관수입 증가율 전망을 합산하여 추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2024.10.

(3) 추계결과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2027년 21억원, 2031년 28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21억원(연평균 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2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04조의30)	-21	-23	-24	-26	-28	-121	-24

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동 제도는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 적용대상은 비료⁵⁾, 농약⁶⁾,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기계, 양돈케이지·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 어망·선박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⁷⁾ 등임

□ 최근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전체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8,770억원, 2023년 2조 3,047억원 등으로 집계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어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

[표 30]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2019~2023년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액	18,770	17,763	18,481	21,886	23,047

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2023년의 경우 96.4%,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3% 수준으로 집계

5)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6) 「농약관리법」에 따르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 축산기계, 어업용기자재,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임

[표 31]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기자재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 2019~2023년

(단위: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축산·임업용(제105조제1항제5호)	95.8	95.8	96.0	95.8	96.4
어업용(제105조제1항제6호)	4.2	4.0	4.2	3.6	3.3

주: 공급가액은 신고(귀속) 기준 금액이며,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영세율 대상인 기자재 공급가액 자료를 반영하여, 전체 조세지출액을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로 구분함

- 매년 전체 조세지출액(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

[표 32] 최근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9~2023년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17,976	17,048	17,697	21,092	22,275
어업용 기자재	794	715	784	794	772

(2) 추계방법

-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30년 3조 2,418억원 등으로 추정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9년 1조 7,976억원에서 2023년 2조 2,275억원으로 2019~2023년 5년간 연평균 5.5% 증가한 것으로 추정

[표 33] 최근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9~2023년

(단위: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률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	17,976	17,048	17,697	21,092	22,275	5.5

-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연평균

5.5%)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표 34] 향후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 2024~2030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	23,502	24,796	26,162	27,602	29,122	30,726	32,418

□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5년 772억원 등으로 추정

- 최근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21년 784억원, 2022년 794억원,
2023년 772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

[표 35] 최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추정치):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조세지출액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	794	715	784	794	772	772

- 최근(2019~2023년) 조세지출액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추계기간 조
세지출 규모는 최근 평균과 동일한 수준(연간 772억원)일 것으로 추정

[표 36]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 2024~2030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	772	772	772	772	772	772	772

(3) 추계결과

□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
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는 2026년 2조 6,933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4조 9,888억원(연평균 2조 9,9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6~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11조 1,966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3조 7,922억원 감소 예상

[표 37]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26,933	-28,374	-29,894	-31,498	-33,190	-149,888	-29,978
- 국세(74.7%)	-20,119	-21,195	-22,331	-23,529	-24,793	-111,966	-22,393
- 지방소비세(25.3%)	-6,814	-7,179	-7,563	-7,969	-8,397	-37,922	-7,584

차.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106조)

- (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3호)

(가) 감면실적

- 최근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과 관련한 농업법인의 매출액 금액은 2020~2022년 연평균 1,788억원으로 집계

[표 38]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현황: 2020~2022년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연평균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매출액	1,814	1,518	2,000	1,778

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자료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

(나) 추계방법

- 추계기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율은 21.34% 수준으로 전제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상 관련 산업의 최근 평균 부가가치율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39]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율: 2021~2023년

(단위: %)

산업(「기업경영분석」 기준)	2021	2022	2023	연평균
농업	24.56	20.49	18.96	21.34

자료: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는 2027년 38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90억원(연평균 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7~2031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142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48억원 감소 예상

[표 40]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3호)	-38	-38	-38	-38	-38	-190	-38
- 국세(74.7%)	-28	-28	-28	-28	-28	-142	-28
- 지방소비세(25.3%)	-10	-10	-10	-10	-10	-48	-10

(2)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가) 최근 공동주택 면적 및 관리용역비 현황

- 2022~2024년 관리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규모 추세는 다음과 같음
 - (비수도권 읍·면) 85㎡ 초과 주택의 총 주거전용면적은 연평균 3.8% 증가
 - (그 외 지역) 85~135㎡ 규모 주택의 총 주거전용면적은 연평균 1.7% 증가

[표 41] 개정안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총 주거전용면적 현황: 2022~2024년

(단위: 만㎡)

지역(주거전용면적)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읍·면(85㎡ 초과)	710	729	765	3.8
그 외 지역(85~135㎡)	14,848	15,102	15,345	1.7

자료: 한국부동산원 제공자료를 활용해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2024년 주거전용면적 1㎡당 평균 관리용역비 추세는 다음과 같음

- (비수도권 읍·면) 연평균 일반관리비 3.4%, 청소비 3.9%, 경비비 0.8% 증가
- (그 외 지역) 연평균 일반관리비 4.4%, 청소비 4.5%, 경비비 1.4%

[표 42] 개정안의 대상인 공동주택 유형별 평균 관리용역비(1㎡당) 현황: 2022~2024년

(단위: 원/㎡)

지역(주거전용면적)	관리용역비 구분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읍·면 (85㎡ 초과)	일반관리비	4,677	4,880	5,005	3.4
	청소비	2,458	2,575	2,654	3.9
	경비비	2,931	2,976	2,978	0.8
그 외 지역 (85~135㎡)	일반관리비	4,923	5,154	5,368	4.4
	청소비	2,376	2,500	2,595	4.5
	경비비	4,224	4,320	4,343	1.4

자료: 한국부동산원 제공자료를 활용해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향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비 추정

- 추계기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전체 관리용역비는 지역별로 ‘총 주거 전용면적(A) × 1㎡당 평균 관리용역비(B1+B2+B3)’를 산출하여 합산
- 총 주거전용면적 및 1㎡당 관리용역비는 최근 연평균 증감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표 43] 개정안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전체 관리용역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 원/㎡, 억원)

지역(주거전용면적)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비수도권 읍·면 (85㎡ 초과)	총 주거전용면적(A)		824	855	887	921	956
	관리 용역 비	일반관리비(B ₁)	5,356	5,541	5,732	5,929	6,133
		청소비(B ₂)	2,865	2,977	3,093	3,214	3,339
		경비비(B ₃)	3,025	3,049	3,073	3,097	3,121
그 외 지역 (85~135㎡)	총 주거전용면적(A)		15,858	16,121	16,389	16,661	16,938
	관리 용역 비	일반관리비(B ₁)	5,853	6,112	6,382	6,665	6,959
		청소비(B ₂)	2,833	2,960	3,093	3,232	3,377
		경비비(B ₃)	4,464	4,526	4,589	4,653	4,718
전체 관리용역비			21,780	22,911	24,106	25,368	26,701

- 추계기간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율은 78.46% 수준으로 전제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상 관련 산업의 최근 연평균 부가가치율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4] 공동주택 관리용역 관련 부가가치율: 2021~2023년

(단위: %)

산업(「기업경영분석」 기준)	2021	2022	2023	연평균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80.01	78.05	77.32	78.46

자료: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는 2026년 1,70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9,483억원(연평균 1,8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6~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7,084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2,399억원 감소 예상

[표 45] 공동주택 관리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공동주택 관리구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4 호의2)	-1,709	-1,798	-1,891	-1,990	-2,095	-9,483	-1,897
- 국세(74.7%)	-1,277	-1,343	-1,413	-1,487	-1,565	-7,084	-1,417
- 지방소비세(25.3%)	-432	-455	-479	-504	-530	-2,399	-480

(3) 영구임대주택 난방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가) 면제 대상 주택 수 등

□ (주택 수) 개정안에 따라 난방구역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영구임대주택 수는 14.8만호 수준으로 추정

- 최근 전체 영구임대주택 수는 2021~2023년 연평균 22.0만 호로 집계
 - LH(주택관리공단 관리) 및 지자체·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을 모두 포함

[표 46] 전체 영구임대주택 수: 2021~2023년

구 분	2021	2022	2023	연평균
전국 기준 전체 영구임대주택(a) ¹⁾	215,985	220,711	224,116	220,271

주: 1)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유형을 모두 포함

1. 재고주택 수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난방구역을 공급받는 지역난방 유형의 주택 수는 2021~2023년 연간 4.7만호로 전체 주택(14.5만호)의 32.8% 비중

[표 47]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수: 2021~2023년

구 분	2021	2022	2023	연평균
지역난방 주택(b)	47,498	47,498	47,498	47,498
전체 주택(c) ¹⁾	144,691	144,691	144,691	144,691
지역난방 주택의 비율(d=b/c)	32.8	32.8	32.8	32.8

주: 1) 전체 주택은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유형을 모두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 현재 집계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지역난방 주택 수를 7.2만호 수준으로 추정
 - ‘전체 영구임대주택 연평균 22.0만호×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지역난방 주택 수 비율(32.8%, 주택관리공단 관리 주택 기준)’로 산출

□ (주택 1호당 난방용역비)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영구임대주택 1호당 난방용역비 공급가액은 24.1만원으로 추정

- 2021~2024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지역난방 유형의 주택 수는 연간 4.7만호, 이들 주택의 1호당 평균 난방연료비 공급가액은 24.1만원 수준

[표 48]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지역난방 유형)의 난방용역비: 2021~2024년
(단위: 호, 백만원, 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주택 수(a)	47,498	47,498	47,498	47,498	47,498
난방용역비 공급가액(b)	10,660	10,834	13,367	10,991	11,463
주택 1호당 공급가액(c=b/a)	22.4	22.8	28.1	23.1	24.1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 (부가가치율) 난방용역 공급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21~2023년 연평균 12.04% 수준

[표 49] 난방용역 공급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연평균
연료용 가스,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¹⁾	15.89	9.22	11.02	12.04

주: 1)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나) 추계방법 및 결과

□ (세수효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는 2027년 2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1억원(연평균 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연간 세수효과는 ‘대상 주택 수(7.2만호) × 주택 1호당 난방연료비(24.1만원) × 부가가치율(12.04%) × 세율(10%)’로 추정
- 2027~2031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8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3억원 감소 예상

[표 50]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2	-2	-2	-2	-2	-11	-2
- 국세(74.7%)	-2	-2	-2	-2	-2	-8	-2
- 지방소비세(25.3%)	-1	-1	-1	-1	-1	-3	-1

(4)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5호)

(가) 감면실적

-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0년 1,338억원에서 2022년 876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965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

[표 51]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17~2023년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액	545	650	1,001	1,338	1,267	876	965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9.8%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금액은 2020년 1조 3,385억원에서 2022년 8,756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9,688억원, 2024년 1조 641억원으로 증가⁸⁾

8)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후 누적된 과잉할당·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전 대비 하락한 상황임(관계부처 합동,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2023.9.)

[표 5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금액: 2017~2024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거래금액	5,503	10,509	10,831	13,385	12,666	8,756	9,688	10,641
전년대비 증감률	169.6	91.0	3.1	23.6	-5.4	-30.9	10.6	9.8

자료: 환경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방법 및 결과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는 2026년 1,27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7,781억원(연평균 1,5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추계기간 세수효과는 최근의 조세지출액 증감률(2024년, 9.8%)과 동일한 추세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2026~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5,813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1,969억원 감소 예상

[표 53]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5호)	-1,279	-1,404	-1,543	-1,694	-1,861	-7,781	-1,556
- 국세(74.7%)	-955	-1,049	-1,152	-1,266	-1,390	-5,813	-1,163
- 지방소비세(25.3%)	-324	-355	-390	-429	-471	-1,969	-394

[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 및 평균가격 추이: 2017~2024년

(단위: 만톤, 원/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거래량	2,626	4,751	3,808	4,401	5,472	3,914	8,994	11,124
평균가격	21,131	22,237	29,126	29,026	19,709	20,633	9,987	9,245

주: 1. 거래량은 장내외 거래 합산(KAU, KCU, KOC 중합) 기준이며, 평균가격은 장내에서 거래된 KAU 기준(거래대금/거래량)

자료: 환경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가) 감면실적

- 전기·수소 시내버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19년 437억원에서 2024년 2,078억원으로 연평균 36.6% 증가하는 추세

[표 54] 전기·수소 시내버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액: 2019~2024년
(단위: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연평균 증감률
조세지출액	437	337	409	752	1,304	2,078	36.6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동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은 면제 대상인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최근 증감률(16.7%)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 2023년에 일부 버스(전기·수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⁹⁾)의 연식별 차량대수가 집계된 바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2022~2023년 공급대수를 추정
 - 2022년 신규 버스(2023년 기준 차령 1~2년) 대수는 1,774대
 - 2023년 신규 버스(2023년 기준 차령 1년 미만) 대수는 2,071대로, 전년대비 16.7% 증가

[표 55] 신규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추이: 2022~2023년

(단위: 대, %)

구 분	2022년 ¹⁾	2023년 ²⁾	전년대비 증감률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신규)	1,774	2,071	16.7

주: 1) 2022년 신규 버스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2023년 기준 차령이 1~2년인 버스 대수로 추정함

2) 2023년 신규 버스는 2023년 기준 차령이 1년 미만인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집계됨

1. 마을버스는 집계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음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방법 및 결과

-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는 2026년 3,306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2조 3,073억원(연평균 4,6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9) 마을버스는 집계되지 않음

- 2026~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1조 7,235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5,837억원 감소 예상

[표 56]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3,306	-3,860	-4,506	-5,260	-6,141	-23,073	-4,615
- 국세(74.7%)	-2,470	-2,883	-3,366	-3,929	-4,587	-17,235	-3,447
- 지방소비세(25.3%)	-836	-976	-1,140	-1,331	-1,554	-5,837	-1,167

(6)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가) 감면실적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1~2023년 연평균 4억원 수준

[표 57]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21~2023년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연평균
조세지출액	4	4	4	4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방법 및 결과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는 2026년 4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20억원(연평균 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추계기간 최근의 조세지출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6~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15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5억원 감소 예상

[표 58]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12호)	-4	-4	-4	-4	-4	-20	-4
- 국세(74.7%)	-3	-3	-3	-3	-3	-15	-3
- 지방소비세(25.3%)	-1	-1	-1	-1	-1	-5	-1

(7)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2항제9호)

(가)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동 제도는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
- 동 제도에 따른 최근 조세지출액은 2019년 36억원, 2022년 46억원, 2024년 29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로, 최근(2019~2024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은 32억원 수준

[표 59]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19~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전망)	연평균
조세지출액	36	21	34	46	24	29	32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계방법 및 결과

-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는 2026년 32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58억원(연평균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2019~2024년)의 연평균 조세지출액(32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
 - 2026~2030년 5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118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40억원 감소 예상

[표 60]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2항제9호)	-32	-32	-32	-32	-32	-158	-32
- 국세(74.7%)	-24	-24	-24	-24	-24	-118	-24
- 지방소비세(25.3%)	-8	-8	-8	-8	-8	-40	-8

(8)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추계결과

□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일부 항목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일부 항목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2026년 6,330억 원 등 2026~2031년 6년 간 총 4조 717억원(연평균 6,7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공장 등 급식용역 제공,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면제 등 일부 항목은 현행 감면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표 6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3호)	-	-38	-38	-38	-38	-38	-190	-38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1,709	-1,798	-1,891	-1,990	-2,095	-	-9,483	-1,897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5)	-	-2	-2	-2	-2	-2	-11	-2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5호)	-1,279	-1,404	-1,543	-1,694	-1,861	-	-7,781	-1,556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3,306	-3,860	-4,506	-5,260	-6,141	-	-23,073	-4,615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12호)	-4	-4	-4	-4	-4	-	-20	-4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안 제106조제2항제9호)	-32	-32	-32	-32	-32	-	-158	-32
합 계	-6,330	-7,138	-8,016	-9,020	-10,173	-40	-40,717	-6,786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

(1) 추계방법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 2020~2024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

[표 62]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2020~2024년

(단위: 천kl,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경유	76	81	86	81	82	2.0
중유	50	55	55	54	46	-1.9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간접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

- 추계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
-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표 63] 현행 유종별 세율

유종	교통·에너지·환경세 (A)	개별소비세 (B)	교육세 (C)	자동차세(주행분) (D)	부가가치세 (E)
경유	375원/L ¹⁾	—	A×15%	A×26%	(세전가격 +제세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³⁾) ×10%
중유	—	17원/L	B×15%	—	
윤활유 ²⁾	—	—	—	—	

주: 1) 2026년 이후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은 탄력세율인 375원/L를 반영

2)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

3) 품질검사수수료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석유제품은 0.469원/L

□ 부가가치세 추계 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

○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 최근 실적인 2020~2024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¹⁰⁾

[표 64]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 2020~2024년

(단위: 원/L)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경유(선박용)	416	581	1,090	914	857	772
중유	451	606	895	786	816	711

자료: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www.petronet.co.kr)

(2) 추계결과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추계기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4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가율(2020~2024년)을 반영하여 추정

10)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 ('20) 42.29 ('21) 69.41 ('22) 96.41 ('23) 82.10 ('24) 79.58 ('25.3.) 72.02

[표 65]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 2025~2030년

(단위: 천kl)

유종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경유	84	85	87	89	91	92
중유	46	45	44	43	42	41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경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375원/L) × 조정계수*
- 개별소비세액 = 중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17원/L) × 조정계수*

*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1.083, 개별소비세 0.822)

[표 6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귀속)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교통·에너지·환경세	-347	-354	-361	-368	-375
개별소비세	-6	-6	-6	-6	-6

(나)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개별소비세 추계액) × 15%
- 자동차세액(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26%

[표 67]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 감면액 추계(귀속)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교육세	-53	-54	-55	-56	-57
자동차세(주행분)	-90	-92	-94	-96	-98

(다) 부가가치세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세액 =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¹¹⁾ × 10% × 조정계수*
- 경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품질검사수수료)×
경유 공급량 추계
 - 중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품질검사수수료)× 중유 공급량 추계
- *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2020년 기준, 1.028) 적용

[표 68]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귀속)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부가가치세	-148	-150	-151	-153	-155

(라) 추계 결과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6년 567억원 등 2026~2031년 6년간 총 3,339억원(연평균 556억원) 감소 예상
-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11)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표 6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징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318	－354	－361	－368	－375	－31	－1,806	－301
－ 개별소비세		－6	－6	－6	－6	－6	0	－30	－5
－ 교육세		－49	－54	－55	－56	－57	－5	－275	－46
－ 자동차세(지방세)		－83	－92	－94	－96	－97	－8	－470	－78
－ 부가 가치세	국세, 74.7%	－83	－112	－113	－114	－115	－29	－566	－94
	지방소비세, 25.3%	－28	－38	－38	－39	－39	－10	－192	－32
전 체		－567	－655	－666	－678	－690	－83	－3,339	－556

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2호)

(1) 감면실적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은 2023년 15억원, 2024년 17억원으로 전망

[표 7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합 계	18	19	14	15	17
부가가치세	3	4	5	5	6
교통·에너지·환경세	13	13	8	9	10
교육세	2	2	1	1	1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및 결과

□ (추계방법)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추계기간 동안 2020~2024년 연평균 조세지출
실적(2024년은 전망)치인 17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

- 조세지출 실적이 증감을 반복하는 등 일관된 추세가 없음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평균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2024년 전망은 신고·진도비를 고려한 수치로 잠정 실적치로 볼 수 있음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7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85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106조제1항 후단, 제111조제1항제2호)	-17	-17	-17	-17	-17	-85	-17
부가가치세	-5	-5	-5	-5	-5	-25	-5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11	-11	-11	-11	-11	-55	-11
교육세	-1	-1	-1	-1	-1	-5	-1

파.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11조의5제1항)

(1) 감면실적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은 2023년 32억원, 2024년은 39억원으로 전망
 - 동 제도는 2020년 세법개정으로 2021년부터 실적치 존재

[표 72]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전망)
합 계	19	30	32	39
교통·에너지·환경세	17	26	28	34
교육세	3	4	4	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한국해운조합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대상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량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세액감면 대상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량을 추정
 - 2025년 이후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은 2022~2024년 연평균 증가율(5.2%)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

[표 73] 한국해운조합 세액감면 대상 경유(MGO) 공급 현황

(단위: kl)

구 분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공급량	47,471	51,074	52,573	5.2%

자료: 한국해운조합

-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 추정치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단가(56원/L)을 곱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을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인 교육세와 각각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액까지 함께 추계
 -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0%, 부가가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에 10% 부과

[표 74] 추계기간 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kl,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세액감면 대상 경유 공급량(A)	58,223	61,272	64,481	67,858	71,411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 ($B = A \times 56 \text{원/L}$)	33	34	36	38	40
교육세 감면액 ($C = B \times 30\%$)	10	10	11	11	12
부가가치세 감면액 [($B + C$) $\times 10\%$]	4	4	5	5	5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2026년 47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259억원(연평균 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제111조의5제1항)	-47	-49	-52	-54	-57	-259	-52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33	-34	-36	-38	-40	-181	-36
교육세	-10	-10	-11	-11	-12	-54	-11
부가가치세	-4	-4	-5	-5	-5	-24	-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세제분석2과	신미정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